국토교통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 - 305호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 유의사항》**

1. 본 사업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 대상사업**입니다.
2. 개찰 후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건설업의 영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공고문 제7항의 안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전자입찰 긴급공고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도7호선 영덕 축산 고곡Ⅰ등 8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다. 추정금액 : 금551,000,000원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
|---|---|---|
| 금418,363,636원 | 금41,836,364원 | 금90,800,000원 |

라. 기초금액 : 금460,200,000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바. 공사위치 : 국도7호선 경북 영덕군 일원

사. 공사내용 : 도로시설물 정비 1식

아. 업종별 추정금액 및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업종 | 추정금액 및 비율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
|---|---|---|
|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 금276,120,000원(50.1%) | 금276,120,000원(60%)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금274,880,000원(49.9%) | 금184,080,000원(40%) |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입니다.

자.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4-260-2533,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입찰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 2026. 9. 15. ~ 2026. 9. 21. 10:00 | 2026. 9. 21. 13:00 | 입찰집행관 PC |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과 **금속 · 창호 · 지붕 · 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6의 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입니다.

라.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바.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아. **공동계약**

- 해당없음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

리비,「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 A값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114,620,508 | 3,700,898 | 4,889,921 | 486,297 | 2,367,751 | 5,992,465 | 97,183,176 | 0 |

1)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원)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차.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의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공사로 세부 절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 제43조의3을 따릅니다.

## 4.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5.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수행능력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방법

1)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합니다.

2)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 필요 시 우리 소에서 별도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4)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 「건설공사발주세부기준」제10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1호) 및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2호)에 따른 실적확인서 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7.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 시행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실조사는 본 공사의 응찰 등록면허를 포함하여 해당업체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면허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나. 본 공사의 개찰 후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 결정에**

서 제외하고 건설업의 영업정지등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
|---|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br>② 기술자자격증 사본<br>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br>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br>(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br>⑤ 기술자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급여이체확인서)<br>⑥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br>⑦ 소득금액 증명원(근로소득자용 및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보유 건설기술인 전원)<br>⑧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및 결산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br>⑨ 회계연차결산일 포함 전후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br>⑩ 사업장 소재지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br>⑪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br>⑫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등 (별첨 서식)<br>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별첨서식, 보유 건설기술인 전원)<br>※ 위 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추후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8.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준수

가. 입찰공고 시 첨부된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표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소개/포항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2.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업역 계약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마. 제2항의 '입찰참가자격''나'항에 따라 시공 중에, 건설업등록기준의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참조) 만약, 시공 중에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 당시 참가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2】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지 서식]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확인(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 |
|---|---|---|---|---|---|
| 상호<br>(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 | | | | |
| 대표자 | | | | | |
| 영업소 소재지 | | | | | |
| 건설업종<br>(종합 또는 전문) | | | | | |
| 등록번호 | | | | | |

최근 (  )년간 아래와 같이 건설공사실적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0 귀하

(단위 : 백만원)

| 업종구분<br>(종합 또는<br>전문 등록업종) | 상대업종분야<br>또는 업무분야 | 년 | 년 | 년 | 년 | 년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ㅇㅇㅇㅇ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3】

#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

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별첨] 등록기준 점검항목(예시)

| 연번 |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
|---|---|
| 1 |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br>※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 2 |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br>※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 3 |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br>※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 4 |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 5 |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 6 |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br>※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 발주자 상황에 따라 점검항목 변경 가능

【붙임4】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ㅇ 공 사 명 : _____

당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계약 공고문의 『안전관리 관련 세부 안내문』을 숙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___월 ___일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안전관리 관련 세부 안내문』

본 공사를 계약한 도급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주의 안전관련 의무사항

○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CEO)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의무사항**)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22.1.27.)」제4조제1항(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조치 필요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일일 안전교육 실시**) **현장관리자**는 당일 **공사 착수전 근로자**의 **건강상태** 점검, 당일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실시**

- (**건설안전 SNS 가입**) 우리 청에서 운영중에 있는 "**영남건설안전365**(카카오채널, 네이버포스트)" **채널 가입,** 각종 **자료*** 현장 활용

* 건설공사 주요 **지적 사례, 사망사고 현황** 및 **사고 예방 대책**, 재해예방 안전기준, **건설안전 우수사례,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자료 등에 대한 **정보제공 중**

### □ 스마트 안전장비 적극 도입 및 지원사업 신청

○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소규모**(300억 미만) **건설현장** 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매년, 상시) 추진

* (신청방법) 국토안전관리원 사이트 접속 → 공지사항 → 해당년도·지역 "스마트" 검색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사업장**(현장)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금**(최대 3천만원) 지원

* (신청방법) clean.kosha.or.kr → 공지사항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참고2** **동의서**

#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_____

ㅇ 주 소 : _____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26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기관장 귀하**

**참고3**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_____(발주청)은 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항 목 | 수집 목적 | 보유기간 |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br><br>*「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3년 |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26 ___월 ___일

(성명) (인)